

일반임기제 기술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임용서류 제출 안내 공고

일반임기제 기술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 최종 합격자 명단(응시번호): [붙임1] 참조

2. 임용 관련 서류 제출

- 제출 대상: 최종 합격자 전원
- 제출 일시(기한): 2026. 5. 20.(수)까지
- 제출 방법: **등기우편(서류 원본) 및 이메일(서류 PDF 사본) 제출 병행**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우) 421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3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채용담당자 앞(일반임기제 기술 7급 합격예정자 증빙서류 재증)
 - 이메일 제출: 담당자 이메일(bgkang0125@korea.kr)로 PDF 사본 제출
- 제출 서류: 붙임2 「임용 관련 서류 제출 안내」 참조
- 임용 일정: '26. 6월 중(일정은 신원조사 등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임용 직후 직무교육 실시 예정

붙임 1 최종 합격자 명단(응시번호)

채용직급	응시코드	응시번호
공업7급 (일반임기제)	공F1	공F1002, 공F1003, 공F1004, 공F1005
	공F2	공F2001
	공F3	합격자 없음
	공F4	공F4001, 공F4002
	공F5	합격자 없음
보건7급 (일반임기제)	보F1	보F1007
시설7급 (일반임기제)	시F1	시F1001
	시F2	시F2001
	시F3	합격자 없음
	시F4	합격자 없음
	시F6	합격자 없음

붙임 2 임용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임용 관련 서류 체크리스트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등기우편 제출과 함께 증빙서류 PDF 사본을 채용 담당자의 이메일로도 제출

임용관련 서류 체크리스트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를 반드시 제거하고 체크리스트 순으로 정리(모아 찍기 인쇄 금지)

① 최종학교졸업(재학·휴학·재적) 증명서 (증빙자료 제출 시 미제출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원본, 1통
② 공무원경력증명서(해당자)	<input type="checkbox"/> 원본, 1통
③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해당자)	<input type="checkbox"/> 사본(앞·뒷면)
④ 채용 신체검사서<서식 1>	<input type="checkbox"/> 검사결과 합격 여부 "합격"
	<input type="checkbox"/> 유효기간 확인(1년)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3>	<input type="checkbox"/> 1부, 동의(본인 자필서명)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4>	<input type="checkbox"/> 1부, 동의(본인 자필서명)
⑦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서식 5>	<input type="checkbox"/> 1부, 문항 체크 후 본인 자필서명

① 최종학교졸업(졸업이 아닐 경우, 재학·휴학·재적·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증명서 1통(원본)

* 고등학교 이하 졸업 증명서는 제출 불요

② 공무원 경력증명서 1통(원본)

* 공무원경력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임기제,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포함), 그 외 공공기관 및 일반 민간경력 등 호봉 인정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임용 후 소속기관에 제출

③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해당자)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1부(앞·뒷면)

* 장애 진단 자료 및 정밀심사 자료(사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확인 서류(사본)

④ 공무원 신체검사서<서식 1>

* 검사에서 발급까지 3~5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기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신체검사를 받고, 반드시 첨부 서식으로 발급받기 바람(첨부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병원자체 서식으로도 제출 가능)

* 신체검사 "판정보류"시, 재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임용 보류(최대 2년)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참고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 각 항목별 동의 및 자필 서명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4>

* 동의 및 본인 자필 서명

⑦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서식 5>

* 문항 체크 후 본인 자필 서명

<서식 1>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 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우: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 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공무원 임용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무원 경력 증명 정보, 복수국적 정보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임용 시 까지(수집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임용자의 정보는 영구보관 자료로 관리)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임용을 제한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1)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공무원 임용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정보, 범죄경력정보, 비위면직 이력 정보, 신원조사회보서 정보, 장여 정보, 채용신체검사서 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임용 시 까지(수집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임용자의 정보는 영구보관 자료로 관리)
- (4)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임용을 제한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공무원 임용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임용 시 까지(수집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임용자의 정보는 영구보관 자료로 관리)
- (4)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임용을 제한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 . .

동의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인사혁신처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비위면직 이력 조회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처리 목적 달성(조회) 시 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임용을 제한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1)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 법무부, 공무원연금공단
- (2)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법무부(복수국적 조회),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 경력 조회)
- (3) 제공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 (4)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처리 목적 달성(조회) 시 까지

* 고유식별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5)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임용을 제한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본인 성명

20
(서명 또는 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임용 전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작성 자

(서명)